

##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8-19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# 1. 제안이유

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군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(안 제2조·제5조·제7조·제9조)

- (현행)2017년 12월 31일까지 ⇒ (변경)2018년 12월 31일까지
-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, 지역특산품생산단지, 농공단지 대체입주자, 시장현대화사업

#### 나. 위임법령의 범위에서 감면기간 조정함(안 제5조·제7조)

- 지역특산품생산단지,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5년 ⇒ 3년으로 변경함
- 근거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

#### 다.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(안 제8조)

- 100분의 100 ⇒ 100분의 50

#### 라.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추가(안 제10조)

#### 마. 법령 중복·재기재 사항 삭제함(안 제11조~14조, 제16조~제18조)

- 직접 사용의 의미, 감면 제외대상,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, 중복감면의 배제, 감면신청 등, 감면자료의 제출, 감면기한의 특례
- 근거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~제180조, 제183조·제184조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3조·제126조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·제55조·제75조의2·제92조의2,

제177조~제180조, 제183조·제184조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3조·제12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8. 2. 14.~3. 6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개정현황

○ 개정완료(9): 김해, 밀양, 사천, 의령, 진주, 통영, 함안, 고성,  
창원

(7)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”을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, 제5조 본문, 제7조, 제9조 중 “2017년”을 “2018년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여부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여부와 관계없이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년간”을 “3년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전문판매점을”을 “전문판매점의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5년간”을 “3년간”으로 한다.

제8조 조 제목 “기업도시”를 “기업도시개발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법 제75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”으로 “감면율”을 “경감률”로 “100분의 10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추진되는”을 “추진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조 제목 중 “자동계좌이체”를 “자동이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”을 “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”을 “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, 제15조를 제11조로 하며, 제16조부터 제18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제4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「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.

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- 1.~2. (생략)
- 3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·개발·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·운영을 하려는 자

제6조(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.

- 1.~2. (생략)

제4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.

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)

2018년

- 1.~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전문판매점의

제6조(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)

---<단서 삭제>

- 1.~2. (현행과 같음)



② (생략)

제11조(직접 사용의 의미)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

제12조(감면 제외대상)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3조(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)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.

제14조(중복감면의 배제)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균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.

제15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(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(「지방세법」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11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2.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

제16조(감면신청 등) ① 이 조례에 따라  
 균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「지방세  
 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에  
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 
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 
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는 감면  
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 
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  
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 
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·결정하고  
 그 내용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 
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 
 통지하여야 한다.  
 ③ 제2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 
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 
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·군·구의 장도  
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  
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  
 할 시·군·구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.  
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  
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·군·구의  
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 
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 
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·군·구의  
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감면자료의 제출) 이 조례에  
 따라 균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 
 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 
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감면기한의 특례) 이 조례에서  
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
 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다.

2. -----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